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8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안 제121조제4항)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이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적용례) 제1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 제203조제3항 및 제4항¹⁾은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를 해당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2조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3조²⁾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선거일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될 경우 동시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23일로 늘어나게 됨.

1) 「공직선거법」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②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2)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그런데 현행법 제121조는 공직선거별로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에 따라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과 비교했을 때 선거운동기간 하루당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공직선거별 선거운동비용 상한>

선거별	금액산정기준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 90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에는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백만원)

연번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1	서울시종로구국회의원선거구	171
2	서울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164
3	대구중구남구국회의원선거구	220
4	경기도안성시국회의원선거구	176
5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국회의원선거구	173
평균		18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국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8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행법이 선거비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함과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구 내 동일한 선거비용제한액 하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므로 동일한

선거에 출마한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둘째, 개정안은 제121조제4항을 신설하여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에는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① 늘어난 선거기간에 비례하여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정 비율만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인지, ②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액수를 가산하는 것인지, ③ 현행법에 따라 인구수에 곱하는 선거비용제한액 단가를 추가조정하려는 것인지 여러 방향으로 신설된 규정을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인상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4억 5,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대통령선거일 등에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 (안 제121조제4항 신설)	-	-	1,457	-	-	1,457	291

주: 1. 대통령선거일 등에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안 제121조제4항)은 의무 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직전 대통령선거일에 5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사례, 직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보전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및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등 선거비용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선거비용제한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선거비용제한액이 상향되는 경우, 보전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